

19세기 조선의 국가, 법, 사회

제 33회 월례발표회 자료집

조선시대 재산상속 - 균분상속의 균열과 그 이후 -
문숙자(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일시 : 4월 28일(금) 15:00 ~ 18:00

○장소 : Zoom 강의실

목차

조선시대 재산상속 - 균분상속의 균열과 그 이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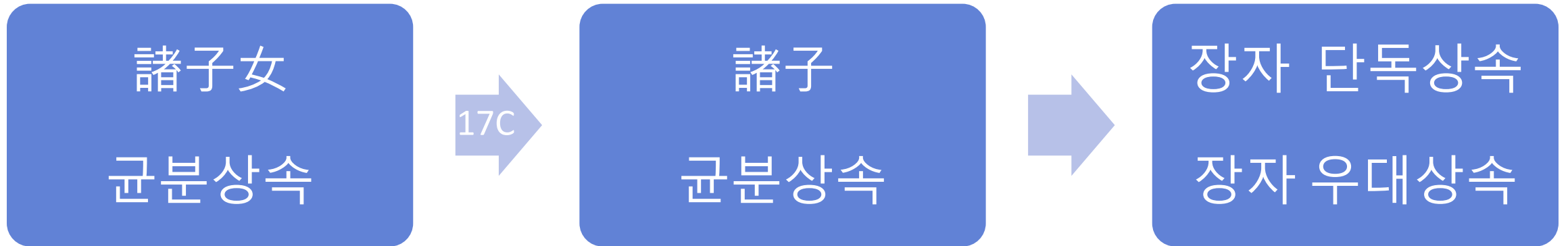
문숙자(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1

이 자료집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2093536)

조선시대 재산상속

- 균분상속의 균열과 그 이후-

1. 조선시대 재산상속의 흐름에 대한 통상적 이해



- 崔在錫, 「朝鮮時代の 相續制에 관한 研究 -分財記의 分析에 依한 接近-」(1972)
: 17세기 중·후반에 균분상속과 윤회봉사가 와해된다는 결론
- 李樹健, 「朝鮮前期의 社會變動과 相續制度」(1991)
: 동일한 결론. 다음의 현상과 함께 상속제가 변화했다는 주장.
 - 1) 균분상속에 수반되던 男歸女家婚에서 親迎으로의 변화
 - 2) 외손봉사가 양자제로 대치
 - 3) 輪廻奉祀로부터 장자 단독봉사로 변화
- ➔ 정치이데올로기로서의 성리학이 宗法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전반에 침투
 - 과연 균분상속이었는가?
 -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였는가?
 - 변화의 시기, 변화의 내용, 변화의 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2. 과연 균분상속인가? 依法한가?

- 상속제 연구의 두 축 : 법과 실제

<경국대전 刑典 私賤條> & <分財文記>

- 金容晩, 「조선시대 均分相續制에 관한 一研究 -그 변화요인의 역사적 성격을 중심으로-」

: 조선전기 상속제의 변화과정을 '실질 平分 → 依法 平分'으로 이행한다고 봄

균분이 약화되어 가는 과정?

以制書有違律論

私賤

未婢子

勿分
論奴

承重子

衆子女

良妻子女

地同則無則之長又先女者限此給子
同○賤良良嫡幼有給若均未孫女
田妾妾妾無次餘承有給滿者殺有
子子子子序則重餘嫡分不無死
女女女女給以子數子數在子分

父母奴婢

加五分之平分

七分之一

類之子五
給口女如
六承各衆
口重給子

同子則嫡之各良各如
女否母類給妾給嫡
賤奴下一子六子
妾婢同口女口女

嫡無子女者
奴婢

平分承重
子則加五
分之一

嫡無子有女者奴婢

承重子則其分加二分

無子女嫡母
奴婢

經國大典五

十三

七分之一
承重子則
加三分餘
還本族無
生則三寸
無三寸則
四寸則三
妻分一孫
七寸分一
賤子之孫
給十之孫
數雖多入
給數如奴
先婢給數
妾小則奴

無子有女嫡
母奴婢

義子女

養子女

賤妾子女

父母奴婢

嫡無子女者
奴婢

嫡及良妾無

女無本族
則屬公同下

承重子七

分之一母

過三口

十分之一

五分之一

平分承重

○ 金務 分給문기(1429)

“□...□邊奴婢 及外祖母處傳得奴婢等乙用良 老壯弱和會 先可參
拾貳口式以 平均□...□”

○ 權邇 남매 分衿文記(1470~1473)

“□...□母氏遺言內 □...□家財家舍等乙 曾受導□□ 老迷弱壯 實
膏瘠分揀 自中和會執籌 平均分執爲去乎...”

➔ 김용만의 '실질평분'의 사례에 포함

<표 1> <김무 분급문기>의 노비분할 내역(1429년)

상속인	장남	2남	3남	장녀	2녀	4남	기타	합계
노비수(구)	37	37	35	34	36	34	12	225

<표 2> <이애 남매 화회문기>의 노비분할 내역(1494년)

상속자	장남	2남	장녀	3남	4남	5남	2녀	6남	7남	계
노비수(구)	107	88	84	80	82	79	78	82	78	758

<표 3> 이함 남매 화회문기의 토지분할 내역 (단위: 두락) 1592년

	田	畚	代田	계
봉사조	4	4		8
장녀	48.5	28	8.2	84.7
차녀	54.7	36		90.7
장남	69.5	40	1.7	111.2
차남	65	44	19	128
차녀	70.5	35		105.5
	312.7	183	28.9	524.6

<표 4> 이광 처 이씨 분급문기(1557년)

재산 / 分衿者	노비(구)	田(斗)	畚(斗)	기타
자 참봉 容	74	235	306	전답불명 30斗
봉사위		18	40	大家1坐 및 代田
첩자 守	7	45	63	瓦家1坐
첩자 宇	7	35	69	
첩녀 庚辰	7	37	29	
가옹 양첩 福只	8	60	49	
計	103	430	556	家2坐, 土地30斗, 代田

<표 5> 이복원남매의 화회 분집(1584~1590년)

財 産 / 分給者	노비(구)	田(斗)	畚(斗)	기 타
장녀 인동현감 유운룡처	缺	缺	缺	
장자 충의위 李復元	102	202	252.5	家基8斗, 瓦家 6間
봉사위	14	45	51	
묘위	1		9	
첩자 愛長	10	39	29	
첩녀 蕙英	6	23	13	
첩녀 愛元	7	28	15	

3. 균분상속의 균열

<분재기 서문에서>

○ “딸은 다른 고장에 살아 先代 제사를 輪行하기 어려우므로, 노비는 이전과 같이 분급하되 전답은 액수를 줄여서 나눠준다. 너희들은 내 뜻을 각별히 영원토록 따르라.” (李楷妻鄭氏 분급문기, 1688)

○ “제사는 딸들이 각기 먼 곳에 살아 설행하기 어려우니 다만 아들로 하여금 오로지 봉행토록 하고 딸들은 윤행치 못하게 하였으므로, 재산을 아들에게 약간 더 주도록 한다. (朴楚杞男妹 화회문기, 1687)

○ “ 딸들은 각기 가난해서 조상 제사를 윤행하기 어려우므로 몫으로 받을 재산을 스스로 감하기를 원하였으니, 비록 정례에는 어긋나나 형세상 이는 당연하다. 이에 두 딸의 전민을 차등 분급 하니 제사를 윤회하지 않게 하여 그 원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李文胄妻申氏 분급문기, 1688)

<李後榮 분급문기(草本, 1713)>

첫째, 적자녀 중 아들에게는 재산을 균분하고, 딸과 서자에게는 그 1/3만 분급한다.

둘째, 제사의 윤행에는 아들만 참여하고 딸은 제외한다.

<金命說 傳後文書(1669)>

우리나라 **종가의 법**은 해이해진 지 이미 오래되어 제사가 衆子에게 윤행됨은 사대부 집안 모두의 굳어진 규례가 되어 있으니 이는 바꿀 수 없으나, 딸의 경우에는 출가하면 다른 가문 사람이 되어 남편을 따르는 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聖人の 예제에도 출가한 딸의 등급을 낮추어 情. 義가 모두 가벼운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도 세간에서는 사대부가의 제사를 사위에게까지 윤행함이 흔한데, 다른 집 사위나 외손 등을 보면 서로 미루다가 제사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비록 지낸다 하더라도 제물이 정결하지 않고 정성과 공경이 없으니 차라리 지내지 않은만 못할 정도이다. 우리 집안은 일찍이 이 일을 선인들께 아뢰어 우리 형제들이 제사의 기본 방침을 정한 지 오래되었고, 사위와 외손의 집에는 제사를 윤행하지 않는 것을 정식으로 삼아 대대로 이를 따르도록 하였다.

부자간의 정리로 보면 아들과 딸이 차이가 없으나 (딸은: 필자)살아서는 봉양할 이치가 없고, 죽어서는 제사지내는 禮가 없으니 어찌 재산에 있어서만 아들과 똑같이 나눌 수 있겠는가. 딸은 1/3만 주어도 情. 義에 비추어보면 조금도 불가할 것이 없으니 딸과 외손들이 어찌 감히 이를 어기고 서로 다툼 마음이 생기겠는가.

<吳載勳男妹 화회문기(1701)>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유훈 내에,

“남매가 재산을 나누는 것이 마땅히 한결같이 공평해야 하나 공평하게 나누면 제사 또한 똑같이 윤회해야 한다. 내가 보건대, 사대부가의 딸들은 시집간 후에는 본가의 제사를 마음대로 설행하지 못하고 폐하게 될 염려가 있으니 이는 가히 한심한 노릇이다. 딸에게는 몫을 나눠 주되 약간을 감하여 주고 본가의 제사를 윤회하지 말라”

고 거듭 강조하여 일가의 모든 이들이 이를 따라 이미 바꿀 수 없는 가법이 되었으니 이번에도 한결같이 선조의 유훈에 따라 약간을 감등 하므로 자손들은 이를 몸소 유념토록 하라.

4. 균열 이후를 보는 시각

1) 상속제 연구 1세대의 전망

○ 최재석

- 재산 : 봉사조 증가로 종가 재산이 격증, 장남우대상속 정착(17세기 후반)
- 제사(3단계) : 장자봉사, 자녀윤회봉사 병행(~17세기 중엽)
→ 장자봉사로 이행(~18세기초) → 18세기초 이후 장자봉사 정착

○ 이수건

- 재산 : 18세기초 이후 장남우대, 남녀차별상속 정착
- 제사(2단계) : 17세기, 자녀윤회봉사가 諸子 윤회봉사로 → 17세기 후반, 자녀 차등상속제와 다량의 승중 몫이 적장자에게 관장되면서 적장자 단독봉사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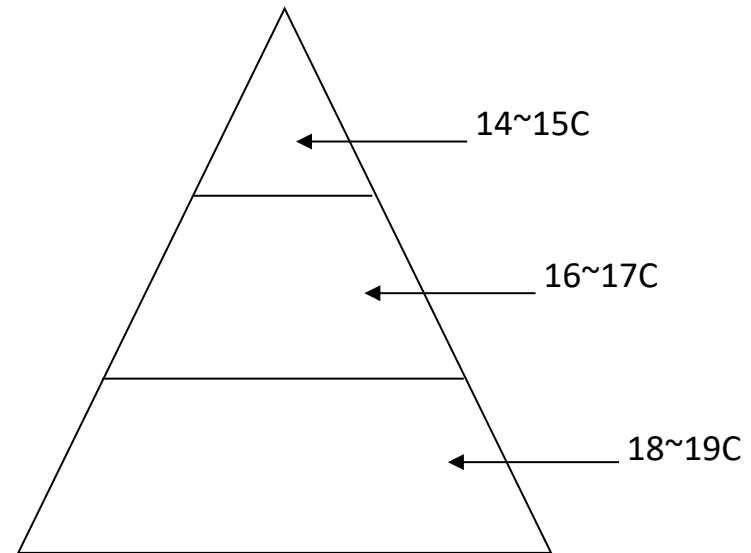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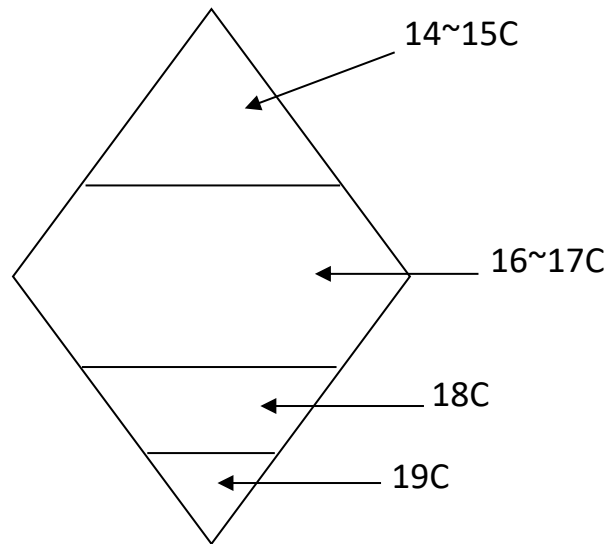
2) 변화의 원인 : “종법적 가족질서의 정착“

- 종법질서의 정착이 친족제 전반의 변화를 이끌었다.

(상속제의 변화 역시 친족제 변화의 일환)

➔ '유교적 정통론에 입각한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정착'을 상속제 변화의 원인으로 설명

분재기 분포 - 해석에 영향을 미쳤을까?



3) 그들의 해석이 미친 영향

(상속제 또는 친족제 연구자 아닌 다른 그룹에 미친 영향)

: 유보적인 태도에서 단정적(확정적) 태도로의 변화

○ 이창기, [성리학의 도입과 한국가족제도의 변화-종법제도의 정착과 부계혈연집단의 조직화 과정]

: 17세기 이후 한국 가족제에 종법제 정착

- 종법적 가족제의 특징 : 1. 가족 내 재산과 권력의 적장자계승 2. 적장자 단독상속과 적장자 가계계승을 위해 한 가계의 역량이 총집결

○ 박훈택, [조선후기 적장자 상속의 역사적 기원]

: "17세기 이후 조선의 양반가계는 장자 단독상속과 단독봉사를 실현한 가부장적 가족의 전형 "

○ 마르티나 도이힐러, [한국사회의 유교적 변환](이훈상 역)

: 조선 사회의 유교적 변환을 화두로 연구

- 17세기 이후의 재산상속 : “상속 재산은 보통 조상전래 재산과 당대에 매득한 재산으로 나뉜다. 前者는 주로 봉사조로 전래되고 後者는 상속분으로 쓰인다.”

“이때 조상전래 재산이 아닌 부모의 재산은 대부분 장남에게 상속되었다.”

5. 균열 이후의 상속-실제 사례를 통하여-

영양남씨 蘭皐 南慶薰(1571~1612) 후손 가계의 17~19세기 분재기

번호	명칭	작성연대	財主	상속인	재주와 상속인 관계
1	남길처신씨 분급문기	1668	南佶妻申氏	2남1녀	母-子
2	남상주 자녀 화회문기	1691(추정)	南老明 외	4남1녀	남매
3	남노명 분급문기	1720	남노명	1남3녀, 서1남1녀	父-子
4	남 국 시 처 류 씨 분급문기	1737	南國蓍妻柳氏	3남1녀	母-子
5	남이만 분급문기	1751	南履萬	2남2녀	父-子
6	남경복 자녀 화회문기	1784	南斗陽 외	3남2녀	남매
7	남두양 분급문기	1811	南斗陽	2남	父-子

• 각 분재기별 재산분할 내역

번호	작성연대 (년)	상속인	재산분할 방식	분재총량 (노비 : □)	분재총량 (토지)
1	1668	2남1녀	子女균분	29	414.5 두 락 지 +4 곳
2	1691 추정	6남1녀	子女차등, 諸子균분	13	187두락지+7곳
3	1720	2 남 3 녀, 서1남1녀	子女차등, 諸子균분 子>庶子>女>庶女	63	793.3 卜+2곳
4	1737	3남1녀	子女차등, 諸子균분	11	291.1 卜
5	1751	2남2녀	子女차등, 諸子균분	8	217.1 卜
6	1784	3남2녀	子女차등, 諸子균분 토지분급에서 딸 제외	5	118.1 卜
7	1811	2남	季兒>伯兒		105.2 卜

• 봉사조 설정 내역

번호	작성연대(년)	봉사조 명칭	봉사조 내역	장자 몫 (7번은 차자 몫)
1	1668	제사조	노비 2구 畵 9.5두락지+△(마멸분1) 田 11.5두락지	노비 9구 畵 44두락지+1곳 田 60두락지 代田 3두락지
2	1691 추정	제사조(추정)	노비 1~2구(마멸분 포함) 畵 약 10두락지	노비 2구 畵 3두락지 田 23두락지+△(마멸분1곳) 代田 1두락지
3	1720	선세제위조	노비 16구 畵 85卜 田 49.9卜 代田 17.6卜	노비 14구 畵 61.5卜 田 211卜
		신제위조	6구 畵 16.4卜	
4	1737	신제위조	노비 2구 畵 14卜 田 13.8卜	노비 4구 畵 40.1卜 田 74.6卜
5	1751	제위	노비 2구 畵 14.6負 田 35.3負	노비 2구 畵 54.8負 田 25.6負
6	1784	제위조	노비 1구 畵 14.4負 田 4.3負	답 13.5負 田 12負
7	1811	자기제위조	답 14負	답 25.4負 田 50.8負

○ 난고 종택 사례가 의미하는 것

: 제자녀 균분 → 제자 균분 → 장자 우대(단독) 상속

- 두 번째 단계는 지속 시기가 짧은 과도기로 이해해 왔으나
자료로 입증되지 않는다.

- 이 시기가 길어지면서 세 번째 단계로 이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속방식의 분화가 나타난다.

6. 상속제의 분화

○ 균분상속 균열 이후 재산상속 분화

- ① 딸에게 재산을 減給한 상태로 아들 사이에서는 균분상속을 지속
- ② 장남을 조금 우대하여 '장남>아들>딸' 순으로 상속분에 층위가 발생
- ③ 장남에게 재산을 加給 하되 다른 자녀에게는 아들·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상속분을 지급하는 형태 (장남>아들=딸)

○ 奉祀 방식의 분화

- ① 遠代 제사만 장남이 담당
- ② 기제사는 윤행, 묘제는 장남 담당
- ③ 기제사는 장남, 묘제는 윤행

- ➔균분상속에서 딸이 배제된 이후 재산상속, 봉사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
- ➔하지만 분화한 이후에도 일정한 관습없이 代가 바뀌면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기도

경상도 성주의 한주 李震相(1818~1886) 종가, <祭祀輪行案>

: 大宅과 小宅이 한 해 씩 돌아가며 4대 조상의 기제 봉향

큰 집은 李震相을 작은 집은 그 아우 李雲相을 가리킴

➔ 19세기말 대표적 유학자 집안에도 장남 단독봉사는 없었다는 사례

7. 해석, 과제

- 17세기 중·후반에 균분상속에 균열이 생겼으며, 자녀간 균분상속으로 부터 딸이 소외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는 데에는 견해가 일치한다. 이는 경국대전 규정된 균분상속 지침이 무너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분재기로 대표되는 양반가의 고문서로도 입증되는 내용이다.
- 문제는 그 이후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있다. 분재기는 그 이후의 일관된 변화를 입증해주지 못하고 있다.
- 장남 위주의 재산상속과 장남 단독봉사로 향했다는 주장은 균분상속의 와해 원인을 종법의 정착으로 본 데에서 유발된 전망이다. 변화의 원인을 종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변화의 종착점 역시 종법이 추구하는 친족구조 즉 장남 단독상속과 단독봉사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 실제 장남 위주로 재산과 제사가 재편되었는지, 재편된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할지,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